

서울특별시 공영장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251
----------	------------

제안년월일 : 2018년 2월 23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공영장레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본 조례안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실효성, 집행가능성 및 공청회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일부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공영장레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시장은 장레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 라. 시장은 공영장레의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유가족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민간기관 등”을 “연고자 등”으로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① 시장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 장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

3.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8조(지원내용) ①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한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

-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수정한다.

안 제13조 중 “시장”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신청인”을 “연고자 및 신청인”으로 각각 수정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좌 동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u>유가족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민간기관</u>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p> <p>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p>	<p>제2조(정의) < 삭 제 ></p> <p>“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p> <p>2. <좌동></p>

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공영장래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좌동>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좌동>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

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 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 할 때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장은 제4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② ~ ③ < 좌 동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좌 동 >

제6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시신
2.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신설>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
3.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원방법) < 좌 동 >

제8조(지원내용) ①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설장례식장 및 자치구가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을 노인돌봄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장례서비스 집행 기준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또는 장제급여수급자는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7조제1항에 의해 현금지원이 결정

제8조(지원내용) ①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한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 삭 제 >

④ < 삭 제 >

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10조제2항의 민간 기관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레 지원 업무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레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위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결과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레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공영장레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비용환수) 시장은 제12조의 조사결과 제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 동 >

제11조(재정지원) < 좌 동 >

제12조(지원결과 관리)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레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공영장레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비용환수)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의

9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10조에 따른 위임·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사결과 제9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 또는 제10조에 따른 위임·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 좌 동 >

부 칙 < 좌 동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 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 할 때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
3.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내용) ①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례지원

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위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결과 관리)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레지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공영장레지윈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비용환수)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의 조사결과 제9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 또는 제10조에 따른 위임·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레지윈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